

의안번호	2200295
의 퇴 인	서영교 의원
회 답 일	2024.6.14.
추 계 번호	24E0711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기본공제 확대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기본공제금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
- 재정수입 감소는 2025년 4조 1,495억원, 2029년 3조 831억원 등 2025~2029년 5년간 총 16조 703억원(연평균 3조 2,141억원)으로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기본공제 확대 (안 제50조제1항)	-41,495	-30,875	-28,081	-29,420	-30,831	-160,703	-32,141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50조1항 (기본공제)	○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본공제금액을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조정 - (현행)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* 1명당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* 본인 및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)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- (개정안)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* 1명당 2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0조1항 (기본공제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의 부칙(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)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시행하며, 법 시행 이후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
 - 2024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2025년부터 세수효과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(징수기준)
- 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감면 실적

- (기본공제) 2022년 근로소득자(결정세액 있는자)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한 기본공제 규모는 각각 36.5조원, 24.1조원으로 각각 2017~2022년 동안 연평균 3.4%, 7.0% 증가

[표 2]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규모 추이: 귀속연도 기준

(단위: 천명, 억원, %)

	2018	2019	2020	2021	2022	연평균
적용인원	11,353	12,109	12,237	12,916	13,629	12,449
(증가율)	(7.0%)	(6.7%)	(1.1%)	(5.5%)	(5.5%)	(5.1%)
공제금액	324,554	340,508	342,641	353,294	364,928	345,185
(증가율)	(5.1%)	(4.9%)	(0.6%)	(3.1%)	(3.3%)	(3.4%)

주: 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

자료: 국세청, 「국세통계연보」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3]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규모 추이: 귀속연도 기준

(단위: 천명, 억원, %)

	2018	2019	2020	2021	2022	연평균
적용인원	6,905	7,463	7,844	9,334	10,270	8,363
(증가율)	(7.9%)	(8.1%)	(5.1%)	(19.0%)	(10.0%)	(9.9%)
공제금액	180,484	189,941	193,490	223,350	240,548	191,745
(증가율)	(5.3%)	(5.2%)	(1.9%)	(15.4%)	(7.7%)	(7.0%)

자료: 국세청, 「국세통계연보」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 방법

□ 총급여(종합소득) 규모별로 기본공제금액 인상 전/후의 1인당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, 이를 바탕으로 1인당 결정세액 감소분을 산출한 후 적용 인원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총 세수감소분 추계

- 소득구간별로 현행 1인당 과세표준에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액 증가분을 차감하여 개정안의 과세표준 산출 후, 기본세율을 적용해 현행 및 개정안의 1인당 산출세액 산출
- 현행 및 개정안의 1인당 산출세액에 세액공제·감면액을 반영하여 결정세액 감소분 도출 후 소득구간별 인원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세수감소분 추계
- 개정안에 따라 1인당 기본공제금액이 증가하면 소득세 결정세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기본공제 신청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계

(3) 추계 결과

- 1인당 기본공제금액을 50만원 인상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2년 기준 2조 2,61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근로소득세는 1조 4,712억원, 종합소득세는 7,90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제외하여 추계

[표 4] 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(근로소득세, 2022년 기준)

(단위: 명, 백만원)

총급여액 규모	현행	1인당 과세표준		1인당 결정세액		결정세액 변동분 ²⁾	세수효과 (억원)
	기본공제 인원 ¹⁾	현행	개정안	현행	개정안		
	A	B0	B1	C0	C1	D=C1-C0	E=D×A
합계	10,692,852	—	—	—	—	—	-14,712
1천만 이하	—	—	—	—	—	—	—
1.5천만 이하	115,125	5.2	4.7	0.0	0.0	-0.01	-13
2천만 이하	515,658	7.2	6.7	0.1	0.0	-0.02	-86
3천만 이하	2,056,617	11.3	10.7	0.2	0.1	-0.02	-396
4천만 이하	1,826,774	17.0	16.4	0.5	0.4	-0.06	-1,130
4.5천만 이하	808,474	21.6	20.9	1.0	0.9	-0.08	-657
5천만 이하	718,759	24.9	24.0	1.4	1.3	-0.10	-701
6천만 이하	1,181,064	30.1	29.1	2.1	1.9	-0.12	-1,433
8천만 이하	1,542,484	41.2	39.9	3.6	3.4	-0.16	-2,462
1억 이하	903,603	58.2	56.8	6.7	6.4	-0.30	-2,691
2억 이하	920,727	95.8	94.3	16.4	15.9	-0.50	-4,579
3억 이하	71,316	197.4	195.9	52.9	52.3	-0.55	-390
5억 이하	23,486	327.2	325.8	102.4	101.9	-0.54	-126
10억 이하	7,247	607.2	605.9	215.8	215.2	-0.54	-39
10억 초과	1,516	1,964.3	1,963.1	810.7	810.2	-0.55	-8

주: 1) 결정세액이 있는 기본공제 신청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제외한 인원 추정치로, 총급여규모별 종합소득신고자 비율(국세청 제공)을 반영하여 추정함

2) 현행 소득규모별 1인당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,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반영하여 산출

자료: 국세청, 「2023 국세통계연보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5] 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(종합소득세, 2022년 기준)

(단위: 명, 백만원)

종합소득금액 규모	현행	1인당 과세표준		1인당 결정세액		결정세액 변동분 ²⁾	세수효과 (억원)
	기본공제 인원 ¹⁾	현행	개정안	현행	개정안		
	A	B0	B1	C0	C1	D=C1-C0	E=D×A
합계	7,634,342	—	—	—	—	—	-7,905
1천만 이하	1,890,845	2.9	2.3	0.08	0.05	-0.03	—
2천만 이하	1,989,729	9.6	8.9	0.3	0.3	-0.03	-520
3.5천만 이하	1,615,048	19.1	18.3	0.9	0.8	-0.10	-689
4천만 이하	304,061	28.7	27.8	2.1	1.9	-0.12	-1,694
5천만 이하	425,214	35.3	34.3	2.9	2.8	-0.13	-376
6천만 이하	293,687	44.3	43.2	4.0	3.9	-0.14	-564
8천만 이하	367,208	57.3	56.1	6.3	6.1	-0.25	-417
1억 이하	214,350	76.6	75.4	10.3	10.1	-0.26	-915
2억 이하	353,117	121.9	120.7	23.0	22.6	-0.39	-556
3억 이하	84,192	226.8	225.6	56.0	55.6	-0.42	-1,382
5억 이하	53,814	361.9	360.7	101.4	101.0	-0.44	-354
7억 이하	18,298	566.8	565.7	175.3	174.9	-0.46	-238
10억 이하	11,249	804.9	803.7	262.9	262.4	-0.46	-85
10억 초과	13,530	2,532.7	2,531.7	931.1	930.7	-0.46	-52

주: 1) 결정세액이 있는 자

2) 현행 소득규모별 1인당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,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반영하여 산출

자료: 국세청, 「2023 국세통계연보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 기본공제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따를 것으로 가정 ([표 2], [표 3]참조)
 - 근로소득세 3.4%, 종합소득세 7.0%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재정수입 변화(소득 발생연도 기준)

(단위: 억원)

세목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근로소득세	-15,725	-16,258	-16,809	-17,378	-17,967	-18,576	-102,714	-17,119
종합소득세	-9,051	-9,685	-10,364	-11,090	-11,867	-12,698	-64,754	-10,792
합계	-24,776	-25,943	-27,172	-28,468	-29,834	-31,274	-167,467	-27,911

- 소득세의 징수시점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 2025년 4조 1,495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16조 703억원(연평균 3조 2,14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2025년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('25년 2월)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('25년 5월)로부터 발생하는 세수효과와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 동시 발생¹⁾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재정수입 변화(징수 기준)

(단위: 억원)

세목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근로소득세	-27,919	-20,873	-17,378	-17,967	-18,576	-102,714	-20,543
종합소득세	-13,576	-10,002	-10,703	-11,453	-12,255	-57,989	-11,598
합계	-41,495	-30,875	-28,081	-29,420	-30,831	-160,703	-32,141

1)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신고분부터 개정안을 적용함에 따라, 근로소득세의 경우 법 시행 첫 해인 2025년은 전년도 귀속소득분에 대한 세수효과와 당해연도 세수효과가 동시에 발생함. 다만, 2025년 2월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어 3월 원천징수분이 납부되는 4월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, 2025년에는 당해연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와 9/12(9개월분)가 반영되고, 나머지 3/12(3개월분)은 2025년(연말정산 시)에 반영되며, 2025년부터는 당해 귀속연도 세수효과가 전부 당해연도에 발생함. 종합소득세의 경우 당해연도에 전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분 및 당해연도 중간예납분에 대한 세수효과를 반영함.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지원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